

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중기 의원 외 13명

나. 의안번호 : 제2295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4. 2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2. 제안사유

-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
- 따라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, 법규 및 예절,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7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1. 4. 9. ~ 2021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) : 원안가결

- 스마트폰, 전자기기 등의 사용으로 보행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,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몐비¹⁾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이 밖에도 PM²⁾(personal mobility)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
- 서울수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강화를 목적으로 ‘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’³⁾을 마련하여 보행안전을 저해

1) 스몐비(smombie)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로 스마트폰(smart phone)과 좀비(zombie)의 합성어로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을 이르는 말,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://opendict.korean.go.kr/dictionary/view?sense_no=1368141

2) PM(personal mobility)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개인형이동수단, 1인승 또는 2인승으로 단거리를 저속으로 이동할 때 사용함,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://opendict.korean.go.kr/dictionary/view?sense_no=803511&viewType=confirm

하는 새로운 위협요인 등에 대비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

- 하지만,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522명으로 해마다 평균 174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상자 수도 31,032명에 이르고 있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시책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임

〈최근 3년간 보행자 사상자 수〉

구 분	계	2017년	2018년	2019년
사망자 수	522	192	186	144
부상자 수	31,032	10,562	10,273	10,197

-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행안전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⁴⁾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

3) ‘2021 보행안전문화 조성 추진계획’ 보행정책과-2693(2021. 3. 1)

4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
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보행자의 보행
안전에 대한 의식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